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65호 |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73호 개별공시지가 지가정정 결정·공시 10
- 미추홀구 고시 제2026-74호 승의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4
- 미추홀구 고시 제2026-75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6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26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8호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7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0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9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08호 2026년 상반기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공시송달 30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 이유

「주차장법」이 일부개정(개정 2025. 12. 2., 시행 2026. 6. 3.)됨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주차장법」제19조의5제2항제3호)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조항 삭제(안 제1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미추홀구청 본관2청사 2층 교통행정과

(2) 연락처: 전화)032-880-4802 팩스)032-880-7469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출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제안이유

- 「주차장법」이 일부개정(개정 2025. 12. 2., 시행 2026. 6. 3.)됨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주차장법」제19조의5제2항제3호)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조항 삭제(안 제18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5. 26.(화) ~ 6. 16.(화)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절차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생략) ② <u>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u>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삭제 2025.12. 2.>

[시행일: 2026. 6. 3.] 제19조의5제2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73호

개별공시지가 지가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 5.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공시

가. 해당년도: 2026년

나.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다. 대상토지 및 정정내역

(단위: 원)

토지소재지	정전 전 지가	정정 후 지가	비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60	1,443,000	1,939,000	일단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4-70	1,4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3	1,4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21	1,4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22	1,4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24	1,4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8-20	1,043,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9-2	1,03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59-4	987,000		

라. 열람장소: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2-880-4235)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열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미추홀구청장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8호 서식(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 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 m ²	의견가격 원 / 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m²)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m²	Appellant's Opinion KRW/ m²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Appellant	Receipt	Verified by Appraisers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Approval Notificat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m²)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74호

승의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6호(2008.6.30.)로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호(2010.2.1.) 및 미추홀구 고시 제2020-24호(2020.2.17.), 제2020-116호(2020.7.13.), 제2020-129호(2020.8.10.), 제2025-213호(2025.12.8.)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의동 18일원 승의3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승의3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승의3 재개발정비구역	미추홀구 승의4동 18번지 일원	32,881.5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32,881.5	-	32,881.5	100.0	
	【획지】	28,931.6	-	28,931.6	88.0	
	공동주택용지	27,691.6	-	27,691.6	84.2	
	종교시설	1,240.0	-	1,240.0	3.8	
	【정비기반시설】	3,949.9	-	3,949.9	12.0	
	공 원	2,074.0	-	2,074.0	6.3	
	도 로	1,875.9	-	1,875.9	5.7	

3.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주거지역	소 계	32,881.5	-	32,881.5	100.00	
	준주거지역	32,881.5	-	32,881.5	100.00	

○ 용도지구 : 해당없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0 (20~23)	국지도로	1,720	9호광장	대2-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3	8 (8~11.5)	국지도로	166	중1-1	소2-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364	중1-2	소2-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5	8 (8~10)	국지도로	45	소1-104	충의 31-64번지	일반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공원	어린이공원	충의동 33-48일원	2,074.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16호 (2008년 6월30일)	무상귀속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개 소	비 고
			기 준	계 획			
				기정	변경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 로 당	획지 1	123.6 이상	135.15	135.15	1	
	관리사무실	획지 1	44.3 이상	160.06	159.2964	1	
	어린이놀이터	획지 1	936.0 이상	939.42	940.15	2	
	보육시설(어린이집)	획지 1	287.43 이상	344.49	344.49	1	
	문 고	획지 1	33.0 이상	90.08	90.08	1	
	주민공동시설	획지 1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1,044.21	1,044.21	1	
	근린생활시설	획지 1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574.08	574.08	1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승의3 재개발 정비구역	32,881.5	획지①	27,69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29%이하	245%이하	30층이하 (94m이하)																																																									
			획지②	1,240.0	종교시설	60%이하	245%이하	7층이하 (30m이하)																																																									
			허용 용도	획지①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②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허용용도 외 불허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건설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세대수 5% → 39세대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중 2.5%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완화 <table><thead><tr><th colspan="2">구분</th><th>면적(㎡)</th><th>비고</th></tr></thead><tbody><tr><td colspan="2">총 대지면적</td><td>32,881.5</td><td>사업구역 계 면적</td></tr><tr><td colspan="2">기존 도시계획도로 면적</td><td>2,789.99</td><td>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면적</td></tr><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td><td>3,949.9</td><td>12.0%</td></tr><tr><td>도</td><td>로</td><td>1,875.9</td><td>5.7%</td></tr><tr><td>공</td><td>원</td><td>2,074.0</td><td>6.3%</td></tr><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td><td>28,931.6</td><td>획지1(공동주택) 획지2(종교시설)</td></tr><tr><td colspan="2">기준용적률</td><td>230%이하</td><td>201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td></tr><tr><td colspan="2">인센티브 산정</td><td>33.83</td><td>신설되는 공공시설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산정</td></tr><tr><td colspan="2">공공시설 부지제공</td><td>13.83</td><td>$1.5 \times ((3,949.9 - 2,789.99) / 28,931.6) \times 230 = 13.83$</td></tr><tr><td colspan="2">지하주차장 확보시</td><td>10.0</td><td>차도율 35% 이하적용</td></tr><tr><td colspan="2">지역 업체 참여</td><td>10.0</td><td>지역업체 40% 이상참여</td></tr><tr><td colspan="2">개발가능 용적률</td><td>263.83%</td><td>230%+13.83%+10%+10%</td></tr><tr><td colspan="2">(권장)상한용적률</td><td>245%이하</td><td>대상지 계획용적률: 244.18%</td></tr></tbody></table> ※ 비고란의 구성비(%)는 구역면적(32,881.5㎡) 대비 비율임. 신설되는 공공시설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해당부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 시 협의내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음.							구분		면적(㎡)	비고	총 대지면적		32,881.5	사업구역 계 면적	기존 도시계획도로 면적		2,789.99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3,949.9	12.0%	도	로	1,875.9	5.7%	공	원	2,074.0	6.3%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28,931.6	획지1(공동주택) 획지2(종교시설)	기준용적률		230%이하	201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센티브 산정		33.83	신설되는 공공시설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산정	공공시설 부지제공		13.83	$1.5 \times ((3,949.9 - 2,789.99) / 28,931.6) \times 230 = 13.83$	지하주차장 확보시		10.0	차도율 35% 이하적용	지역 업체 참여		10.0	지역업체 40% 이상참여	개발가능 용적률		263.83%	230%+13.83%+10%+10%	(권장)상한용적률		245%이하	대상지 계획용적률: 244.18%
구분		면적(㎡)	비고																																																														
총 대지면적		32,881.5	사업구역 계 면적																																																														
기존 도시계획도로 면적		2,789.99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3,949.9	12.0%																																																														
도	로	1,875.9	5.7%																																																														
공	원	2,074.0	6.3%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28,931.6	획지1(공동주택) 획지2(종교시설)																																																														
기준용적률		230%이하	201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센티브 산정		33.83	신설되는 공공시설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산정																																																														
공공시설 부지제공		13.83	$1.5 \times ((3,949.9 - 2,789.99) / 28,931.6) \times 230 = 13.83$																																																														
지하주차장 확보시		10.0	차도율 35% 이하적용																																																														
지역 업체 참여		10.0	지역업체 40% 이상참여																																																														
개발가능 용적률		263.83%	230%+13.83%+10%+10%																																																														
(권장)상한용적률		245%이하	대상지 계획용적률: 244.18%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환경 보전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생활폐기물등의분리수거및재활용으로청정한생활공간조성
수봉로 및 으뜸길 (폭원20m,10m) 주변 교통소음 대책	• 교통소음 방지를 위한 차폐 조정등 계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재난유형별 방지대책	• 사업지구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재난 등의 예방 및 방지계획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 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내부동선 체계구축
재난방지형 단지배치 및 건축설계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등 재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준수 • 부지 남측 용정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준수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교육시설 현황

- 송의3구역 인접 용정초등학교, 송의 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가 위치해 있음

○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과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으로 과속방지턱등의 차량속도 저감대책 마련
- 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나.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경우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 스쿨존 지정을 통해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

다.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도서관 및 공원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 승의3구역 정비계획 수립 시 학생 수용 처리계획

- 승의3 구역 인근 용정 초등학교 학생 수용 가능함.
- 추후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시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절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9. 세입자 주거대책

○ 계획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 구역 내 자가 및 임대현황

- 계획구역의 임대와 자가의 비율은 가옥주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획구역 내 전체 세대수의 약 48%인 246세대가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512	266	246	1,336	787	549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시행방법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구 분	내 용
예정시기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참고: 2008년 6월 30일 정비구역결정고시(인천광역시2008-116호)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계획구역내의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불량주택으로 미관상 불량할뿐더러 구조적으로도 위험하고, 화재 등 재난 시에도 대처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불량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용도별)

구 분	정 비 계 량 계 획 (동)					비 고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합 계	192	-	-	-	192	
단독 및 다가구주택	151	-	-	-	151	
다세대 및 공동주택	13	-	-	-	13	
주거 및 근린	17	-	-	-	17	
근린생활시설	2	-	-	-	2	
기 타	2	-	-	-	2	
무 허 가	7	-	-	-	7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기반시설 계획표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3,949.9	-	3,949.9	12.0	
	공원	2,074.0	-	2,074.0	6.3	
	도로	1,875.9	-	1,875.9	5.7	

1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	중(국)1-1호선 변	폭5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소(국)1-103호선 변			
		소(국)1-104호선 변			
		필지 21-20번지 변			
		필지 21-22번지 변			
		필지 15-17번지 변			
	획지1 (종교시설)	중(국)1-1호선 변			

-변경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 (공동주택)	중(국)1-1호선 변	폭5m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소(국)1-103호선 변			
		소(국)1-104호선 변			
		필지 21-20번지 변			
		필지 21-22번지 변			
		필지 15-17번지 변			
	획지2 (종교시설)	중(국)1-1호선 변			

○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획지1 → 획지1(공동주택)	• 획지1의 주용도 명시
• 획지1(종교시설) → 획지2(종교시설)	• 오기정정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7. 정비구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승의3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황세대수(가구)			계획세대수	비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가구수	512	266	246	736	

※ 계획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 공통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1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로 주변에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문주 등 상징물을 적용하여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2	영역성 확보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계획
3	활동의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연계하여 계획하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계획
4	조경기준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
5	조명기준	-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계획하며, 대지경계로부터 출입구까지 경로에 옥외등 설치 - 보행로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옥외등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이도록 계획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며, 주야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 아파트기준 반영사항

구 분		설 계 반 영 내 용
1	담장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투시형으로 계획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곳에 배치하여 계획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며,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계획
3	경비실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4	주차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을 균일하게 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주차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계획 ○비상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 또는 벽에 도색을 차별화 하며,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5	조경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6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 하도록 계획 ○각 세대 개구부 또는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7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세대 창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창호를 설치 하며, 잠금장치 설치 계획 ○세대 현관문은 KS F 2637 ,KS F 2638 시험방법에 의해 침입방지 성능을 만족하거나 동등 성능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도어체인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를 지양
8	승강기· 복도 및 계단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옥상 비상구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
9	수직 배관설비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 침입이 용이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방법덮개 설치함으로써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게 계획

※ 인천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준수

1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기존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구내 획지의 토지이용의 특성에 적합한 규모, 주변 획지와의 상호관계 고려
- 통행의 특성 및 보행의 안전성 등을 고려
- 가구내의 현재 기존획지(필지)는 모두 합병하며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함
- 공원, 종교용지는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배치함

○ 획지계획

결정 구분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명 칭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①	28,931.6	28,931.6	①	획지1	송의4동 18-20번지 일원	27,691.6	-	27,691.6	공동주택용지
			②	획지2	송의4동 31-49번지 일원	1,240.0	-	1,240.0	종교 용지

※ 도로, 공원은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2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를 반영하여 임대주택건설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 세대수의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 분	규 모	세 대 수	비율(%)	법 적 기 준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		736	100	
임 대 주택	전용면적(39.99㎡)	39	5.29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함
	계	39	5.29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건설하고 임대주택중 2.5%(전체세대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함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반영.

2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2.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에 관한 운영계획

○ 대상지 내 양호한 수목은 거의 전무한 편이며 보존 가능한 수목은 현재 정원수로서 정비 사업구역 내 녹지공간에 재이식하여 활용할 계획 수립

24.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25.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2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전검토의견 포함) 등에 제출한 조치 의견 이행
-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택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적정규모의 주택공급

27.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75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6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내 공동6BL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6BL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디씨알이대우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 시 공 자: (주)대우건설
4.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 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6BL
 - 나. 대지면적 : 49,140.1m²
 - 다. 규 모 : 지하3층 ~ 지상36층, 주9개동 및 부속12개동
공동주택(1,136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5. 주요변경 내용
 - 사업주체 대표자 변경
 - 설계개요 및 구조 관련 변경 등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5. 20.
7.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8. 5. 31.
8.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8호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19.**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제 목: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2026. 5.19. ~ 2026. 6. 1.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김*하 등 5인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가.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 나. 납세의무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 032-880-4170)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과세번호	납세자명	발송주소	세액	반송사유
1	28177-101501-202606-2-520-000366	김*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길**, 1동 106호 (개봉동, **아파트)	3,930,7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	28177-101501-202606-2-610-000367	이*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3**번길 5, 202호 (작전동)	5,135,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3	28177-101501-202606-2-530-000368	박*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2-**8, 205호 (사동)	4,672,4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28177-101501-202606-2-530-000369	박*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2-**8, 205호 (사동)	4,667,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4	28177-101501-202606-2-570-000370	홍*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번길 4**, 601호 (부평동, ***아파트)	7,168,1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5	28177-101501-202606-2-640-000372	김*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 403호 (간석동, ****빌라)	6,834,4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6	28177-101501-202606-2-510-000375	박*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9** (등촌동)	9,735,3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 불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90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신고),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9. ~6. 2.
3. 공고대상: 총 1건

연 번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1	159거**91	대우*재산업(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262 **	수취인불명

4. 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유의사항

- 과태료 고지 후 체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75%: 60개월)이 추가되며,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사항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9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1.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제 목: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2. 공 고 기 간: 2026. 5. 21. ~ 2026. 6. 4.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이*삼 외 16인 (붙임내역 참조)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공공 기록정보 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나.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세무2과 체납총괄팀 (☎ 032-880-7461)

2026년 상반기 지방세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연번	납부자명	주 소	발송일	송달 결과	반송사유
1	이*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463번길 7*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2	주식회사 유**앤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45-*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3	홍*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9*번길 *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4	오*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4*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5	주식회사 제**닷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6	원*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1*8	2026. 5.12.	반송	수취인불명
7	서*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8	임*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0-*	2026. 5.12.	반송	수취인부재
9	김*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81번길 2*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10	이*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97번길 11*	2026. 5.12.	반송	수취인불명
11	주식회사 *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8*	2026. 5.12.	반송	수취인불명
12	정*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64번길 1*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13	주식회사 **이*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	2026. 5.12.	반송	수취인불명
14	봉*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0*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15	인천**** 주택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8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16	노*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171번길 1-1*	2026. 5.12.	반송	폐문부재
17	심*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47-3*	2026. 5.12.	반송	폐문부재